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95호)

- '97. 3. 11.
- 총무재무위원회
위 원 장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7. 2. 27 서초구청장
나. 위원회 회부일자 : '97. 2. 28.
다. 상정일자 : '97. 3. 11.
라.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 제63회 임시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1회 1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최동영)

가. 제안이유

- 지역주민 건강을 위한 의료서비스 확대 및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소 분소 설치계획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을 자체 상계조정하여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구 본청 정원 15명 감축하여 보건소 분소설치계획에 따른 소요 인력으로 활용
코자 직속기관(보건소) 정원으로 상계 조정
 - 구 본청정원 : 현행 941명 → 926명 (Δ 15명)
 - 직속기관정원 : 현행 78명 → 93명 (증 15명)

다.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정원의 관리)
- 나. 예산조치 : 인건비 약 242백만원, '97. 추경예산 반영 필요
- 다. 합의 : 구청장 방침 제305호 ('97. 2. 15)
 (안 제 3 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보고자 : 전문위원 하영규)

가. 검토내용

1) 제안이유

지역주민 건강을 위한 의료서비스 확대 및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소 분소 설치계획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을 자체 상계 (相計)조정하여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보건소 분소 설치계획에 따른 소요인력을 구본청 정원 15명을 감축하여 이를 대체시켜 직속기관의 정원으로 상계 조정 (안 제2조)

- 구본청 : 현행 941명 → 926명 ($\Delta 15$)
- 직속기관정원 : 현행 78명 → 93명 (증 15)

나. 검토결과

- 지방자치단체가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 한 때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의 범위내에서 서울특별시장의 승인하에 4급 또는 4급 상당이하의 지방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06조 동법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4항, 제40조의2의 제1항, 제3항)
- 본건은 지방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출장소의 설치가 아니며, 단순히 의료서비스의 확대 및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소의 기능을 확대, 연장시키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행정기구에 대한 조례정비는 불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내통령령 제14480호) 제15조(정원관리)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조성대상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체조성을 통해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동 규정 제3항), 또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다만 소속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정원을 조정하여 본청에 기구를 설치할 수 없다(동규정 제5항)고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로 미루어 보아 구본청 정원을 감소하여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정원을 증원시켜 보건소 분소설치에 따른 소요인력에 활용함이 지방 재정의 기전화 운영 및 효율적인 인력관리상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 : 생략 (검토보고서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 보건소 15명 배치 인력을 区 어느부서에서 감축하게되며, 행정 공백을 없는가?
→ 원래는 인력을 증강하여 보건지소를 설치하여야 하나 인력 증원이 불가하여 공익근무요원등이 업무대체하고 있는 기능적 분야를 감축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려고 함.
- 현행 인력을 활용하는 주지 및 목적은 타당함. 区 941명의 인력중 15명에 대한 업무 공백의 대처 방안과 충원계획 그리고 전문직 의사 "나 급"에 대한 충원 방법은?
→ 감축 분야는 보조인력의 업무 대체 가능으로 다소 완충적임. 직원 충원(정원의 증원)은 상부기관에 정원조정 요청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며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음. 전문직 의사는 업무형편상 신규채용 예정임
- 분소 설치에 따른 의료장비는 확보하고 있는가?
→ 의료장비는 계속적으로 구입중에 있으나 문제는 X-RAY 기기의 조달구매 및 외자구매라 기간이 다소 소요되고 있으며 조속한 구매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어 4월말경에는 도입 완료되어 업무 성상가동이 될 것임.
- 수혜세대는 얼마나 되며,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 7개동 14만여명(전체인구 약35%)이 수혜대상이며 실제 수혜인구는 이중 보건소 이용자가 될 것임. 현재 홍보는 미미한 상태이나 3월 중순부터 홍보를 강화할 계획임.

- 업무처리중 보건증 발급업무도 수행하는가? 또한 인력의 배치 내역은?
→ 보건증 발급 업무도 수행함. 그리고 인력 배치 내역은 의사2, 간호사 6, 약사 1, 의료기술 2, 행정직 4, 방호 1 등을 관계 업무분야에 배치할 계획임.
- 보건소 분소 설치에 따른 보건분야 인력증원 불가피한 것인가?
→ 현 우리구 보건분야의 인력은 타구에 비해 절대부족한 여건에 있음. 현 인력을 양분화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임을 이해 바람.
- 지난번('96예산심의시)에는 보건소장께서 현 인력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현재는 추가 인건비 소요 발생요인까지로 변경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 지난번 답변에서는 13명의 추가 증원을 내무부에 요청하였다고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의사 등의 최소 인력을 우선 투입하겠다고 보고 드린바 있음. 우리구의 인력 여건상 현 보건소 인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구청의 인력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업무 대체 가능 분야에서 감축하는 극단의 조치를 하게 된 것으로 이해 바람.
- 상당한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이므로 심도있게 결정하여야 했으며 소요 예산도 '97년도 본예산에 포함됐어야 했고 '96년도에 조례 개정도 있어야 했음.
→ 인건비 소요 판단 문제, 조례개정 등 다소 판단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임.

4. 토론자 및 토론요지 :

(찬성토론 — 김 지 환 의원)

- 약간의 불협리성이 있으나 현 보건소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 함.

5. 수정안의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만장일치)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체계자구 정리내용 : 없음